

제176회 거창군의회정례회
(제2차 본회의)

2011. 7. 18. (월) 10:00~

조례안 심사보고서

(거창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·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등 4건)

산업건설위원회

【 목 차 】

1. 거창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·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	-----	2
2. 거창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	-----	7
3. 거창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안	-----	11
4. 거창군 유통기업 상생발전과 전통상업보존 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-----	14

<의안번호 제2011 - 48호>

거창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·운반 및
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(안)
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: 2011년 7월 4일
- 나. 제출자: 거창군수
- 다. 회부일자: 2011년 7월 4일
- 라. 상정 및 의결일자: 2011년 7월 12일

2. 제안설명 및 요지

가. 제안이유

-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·운반체계 구축 및 재활용 촉진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이후 사후관리적 방안에 중점을 두었던 현행 제도에 대하여 다량배출사업장의 관리 강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단계부터 원천적으로 억제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,
-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시행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명시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과다 배출문제 해결과 낭비 없는 음식문화 정착을 위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기 위함임.

나. 주요내용

- ① 원천적인 발생억제로의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방향 전환에

따른 조례의 제명을 변경함.

- 거창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·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

→ 거창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, 수집·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

- ②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이후 사후관리적 방안에 중점을 두었던 현행 제도를 발생단계부터 원천적으로 억제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사항으로서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과 군수·사업자·주민 등 관계자의 책무,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포함한 감량 의무이행계획 제출 의무화 및 다량배출사업장별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).

- 기본원칙

-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,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적정 재활용

- 관계자의 책무

- 군: 발생억제를 위한 시책 수립·시행

- 사업자, 주민: 발생억제 및 시책 협력

-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방안 신설

- 군: 발생억제 방안에 대한 홍보, 발생억제 우수 주민과 업소 등에 대한 지원

- 다량배출사업자: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 시 발생억제 방안 명시

- ③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시행과 관련한 수수료의 산정 및 부과·징수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명시함(안 제9조).

- 수수료는 종량제 시행과 함께 주민 총 부담이 늘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결정하되, 배출량에 따라 차등 부과

- 단독주택 분리배출 시행에 따라 기 시행하고 있는 공동주택,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사용으로 수수료 징수를 위한 납부확인증(칩) 구입제 도입과 납부확인증 판매인의 준수사항 등 신설
- ④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적정 재활용을 위한 다량배출사업장의 관리를 강화함(안 제2조, 제8조, 제9조, 제15조, 제16조, 제17조, 제18조).
 - 자가처리에 앞서 발생억제 의무를 우선 부여
 - 발생억제보다는 발생 이후 자가처리에 중점을 두었던 감량의무사업장'의 명칭을 '다량배출사업장'으로 변경
 - 음식물류 폐기물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포함한 감량의무 이행계획 제출 의무화
 - 다량배출사업장에서도 종량제 실시
 - 위탁재활용자에게 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 지불
 - 전용수거용기 사용
 - 위탁재활용자와의 계약서에 비용 부과내용 명시
 - 감량의무이행계획 지도·점검
 -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의 이행 여부와 적정 재활용 및 처리 여부
 - 발생억제 방법 등 준수사항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▶ 이 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「표준조례준칙」 및 「발생억제 시책 추진지침」 개정으로 음식물류 다량배출사업장의 관리강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단계부터 원천적으로 억제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,

- ▶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시행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명시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과다 배출 문제 해결과 낭비 없는 음식문화 정착을 위한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·개선하기 위하여 「거창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·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안」을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서 제반 규정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됨.

- ▶ 이 조례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
 - 안 제1조 ~ 제3조(목적, 정의, 적용범위)는 이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뜻을 정의하고 적용범위를 규정한 사항으로 필요조항이며
 - 안 제4조 ~ 제8조(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, 군수의 책무, 사업자 등의 책무, 주민의 책무,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)는 발생단계부터 원천적으로 억제하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사항으로서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 원칙과 군수·사업자·주민 등 관계자의 책무, 다량배출 사업장에 대한 폐기물 발생량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포함한 감량 의무 이행계획 제출 의무화 및 다량배출사업장별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검토됨
 - 안 제9조(음식물류 폐기물 수집·운반·처리수수료의 부과·징수)는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시행과 관련한 수수료의 산정 및 부과·징수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으로서 부합하는 것으로 검토됨

- 안 제10조 ~ 제19조(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협조, 전용 봉투 및 전용수거 용기의 종류·재질,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 수거 용기의 설치, 수집·운반 및 재활용,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·운영, 다량배출사업장의 배출·처리방법 등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, 발생억제 및 적정 재활용에 대한 지도·점검, 발생억제·수집운반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, 과태료의 부과 기준 및 절차)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적정 재활용을 위한 다량배출사업장의 관리를 강화하는 등 제반 규정을 제정한 것으로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됨.
- 이 밖에 기타 상위법 저촉사항이나 행정절차법 이행 등 관계법령을 살펴본 결과 별다른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됨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5. 토론 요지: 해당없음
6. 수정안 요지: 해당없음
7. 심사결과: 원안가결
8. 소수의견 요지: 해당없음
9. 기타 필요한 사항: 해당없음

거창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: 2011년 7월 4일
- 나. 제출자: 거창군수
- 다. 회부일자: 2011년 7월 4일
- 라. 상정 및 의결일자: 2011년 7월 12일

2. 제안설명 및 요지

가. 제안이유

-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인 '토지'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, 주유소·주차장 등의 시설 전·출입로에 대한 도로점용료 산정요율을 인하하는 내용으로 「도로법 시행령」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 내용에 맞게 정비 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내용

- ① 점용료 산정기준이 되는 '토지'의 기준을 명확히 함(안 별표 1 비고 제1호).
 - 인접한 토지 ⇒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(도로부지는 제외한다)
- ② 주유소·주차장·여객자동차터미널·화물터미널·자동차수리소

- 승강대 · 화물적치장 · 휴게소,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의
진·출입로에 대한 도로점용료 산정요율을 인하함(안 별표 1
제4호).
- 토지가격에 0.025를 곱한 금액 ⇒ 토지가격에 **0.02**를 곱한 금액
- ③ 점용료를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와 분할 횟수 및 그
잔액에 대한 이자율을 정함(안 제6조제2항 단서 신설).
-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회 이내에서 분할
하여 부과·징수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잔액에 대하여 연 6퍼센
트의 이자를 붙임
- ④ 점용기간 전체 또는 남은 점용기간에 대하여 점용료를 일시에 부
과·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(안 제6조제3항 신설).
-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점용료의 부과·징수기준은 매 회계연도
단위로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나, 납부 의무자가 원하는 경우에
는 일시에 부과·징수할 수 있도록 함
- ⑤ 점용료를 전액 면제하는 대상으로서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
하는 비영리사업의 시행 주체인 법인의 범위를 명확히 함(안 제8
조 제1항).
- 「도로법 시행규칙」 제24조 각 호의 법인이 시행하는 비영리사업
- ⑥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나 비영
리 목적으로 주택에 출입하기 위한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
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 점용료
를 전액 면제하는 기준을 정함(안 제8조제3항제1항).
-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
축물의 연면적 중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면
적에 대하여 전액 면제
- ⑦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
없는 경우 그 정도에 따른 감면기준은 규칙에서 정하도록 위임근
거를 명확히 함(안 제8조제3항제2호).
- ⑧ 그 밖에 「도로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례의 인용
조문을 변경하고,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라 용어와

표현을 명확하고 논리에 맞게 순화함.

- 도로법 제43조 ⇒ 제41조, 제44조 ⇒ 제42조, 제75조 ⇒ 제84조
- 도로법 시행령 제24조 ⇒ 제28조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▶ 이 조례안은 「도로법」 및 「도로법시행령」이 개정됨에 따라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인 '토지'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주유소·주차장 등의 시설 진·출입로에 대한 도로점용료 산정요율을 인하하기 위하여 「거창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안」을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제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검토됨
- ▶ 이 조례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
 - 안 제1조 ~ 제5조까지는 「도로법」 및 「도로법시행령」 개정에 따라 조례의 인용조문을 변경한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검토됨
 - 안 제6조는 점용료를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와 분할횟수 및 그 잔액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고 점용기간 전체 또는 남은 점용기간에 대하여 점용료를 일시에 부과·징수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한 것으로 부합하는 것으로 검토됨
 - 안 제8조는 점용료를 전액 면제하는 대상으로서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의 시행주체인 법인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목적 달성을 수 없는 경우 그 정도에 따른 감면기준은 규칙에서 정하도록 위임근거를 마련한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검토됨
 - 이 밖에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라 용어와 표현을 명확하고 논리에 맞게 순화하였으며 기타 상위법 저촉사항이나 행정절차법 이행 등 관계법령을 살펴본 결과 별다른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됨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5. 토론 요지: 해당없음

6. 수정안 요지: 해당없음
7. 심사결과: 원안가결
8. 소수의견 요지: 해당없음
9. 기타 필요한 사항: 해당없음

거창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: 2011년 7월 4일
- 나. 제출자: 거창군수
- 다. 회부일자: 2011년 7월 4일
- 라. 상정 및 의결일자: 2011년 7월 12일

2. 제안설명 및 요지

가. 제안이유

-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,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과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내용

- ①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뜻을 정의하고, 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를 제1장 총칙으로 규정함(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).
- ②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군수의 자문에 조언하게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‘거창군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’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2장에서 규정함(안 제4조부터 제13조까지).

- ③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을 촉진하기 위한 5년 단위의 지방교통 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의 수립 및 그 집행을 위한 연차별시행계획의 수립과 저상버스의 도입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3장에서 규정함(안 제14조, 제15조).
- ④ 교통약자의 이동에 관한 정보의 제공, 상담 및 서비스 연계를 위한 ‘이동지원센터’의 설치 및 기능과 그 운영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4장에서 규정함(안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).
- ⑤ 특별교통수단의 운영과 그 이용대상자의 범위, 이용요금에 관한 사항을 제5장에서 규정함(안 제21조, 제22조)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▶ 이 조례안은 「교통약자의 이용편의 증진법」에 의거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과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「거창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안」을 신규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검토됨
- ▶ 이 조례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
 - 안 제1장(총칙)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뜻을 정의하고 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한 사항으로 필요사항이며
 - 안 제2장(거창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)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군수의 자문에 조언하게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“거창군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”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
 - 안 제3장(지방교통 약자이동편의 증진계획)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추진하기 위한 5년 단위의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및

- 그 집행을 위한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과 저상버스의 도입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으로 부합하는 것으로 검토됨
- 안 제4장(이동지원센터)은 교통약자의 이동에 관한 정보의 제공, 상담 및 서비스 연계를 위한 “이동지원센터”의 설치 및 기능과 그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으로서 적당하다고 판단됨
 - 안 제5장(특별교통수단)은 특별교통수단의 운영과 그 이용 대상자의 범위, 이용요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타당하다고 사료됨
 - 안 제6장(보칙)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정확보에 관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규칙 위임사항으로 필요조항으로 판단됨
 - 이 밖에 기타 상위법 저촉사항이나 행정절차법 이행 등 관계법령을 살펴본 결과 별다른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됨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5. 토론 요지: 해당없음

6. 수정안 요지: 해당없음

7. 심사결과: 원안가결

8. 소수의견 요지: 해당없음

9. 기타 필요한 사항: 해당없음

거창군 유통기업 상생발전과 전통상업보존 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: 2011년 7월 4일
- 나. 제출자: 백범영의원 외 3인
- 다. 회부일자: 2011년 7월 8일
- 라. 상정 및 의결일자: 2011년 7월 12일

2. 제안설명 및 요지

가. 제안이유

-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를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현행 500미터 이내에서 1킬로미터 이내로 확대하고 그 유효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「유통산업발전법」이 개정(2011. 6. 30. 공포·시행)됨에 따라,
- 전통시장과 중소유통업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범위를 확대하고 그 유효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지역 실정에 적합한 유통산업의 발전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내용

- ①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를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에 따른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‘500미터 이내’에서 ‘1킬로미터 이내’로 확대함 (안 제 11조제1항).

- ②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과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규정의 유효기간을 현행 ‘2013년 11월 23일’에서 ‘2015년 11월 23일’까지로 연장함(조례 제2024호 거창군 유통기업 상생발전과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부칙 제2조)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▶ 이 조례안은 「유통산업발전법」이 개정(2011. 6. 30. 공포·시행)됨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를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현행 500미터 이내에서 1킬로미터 이내로 확대하고 그 유효기간이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됨으로써,
- ▶ 전통시장과 중소기업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「거창군 유통기업 상생발전과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」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됨.
- ▶ 이 조례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
 - 안 제11조(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)의 500미터를 1킬로미터로 변경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
 - 부칙 안 제2조(유효기간)의 2013년 11월 23일을 2015년 11월 23일로 변경하는 것으로서 부합됨
 - 이 밖에 기타 상위법 저촉사항이나 행정절차법 이행 등 관계법령을 살펴본 결과 별다른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됨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5. 토론 요지: 해당없음

6. 수정안 요지: 해당없음

7. 심사결과: 원안가결

8. 소수의견 요지: 해당없음

9. 기타 필요한 사항: 해당없음